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16

발의연월일: 2021. 4. 26.

발 의 자:어기구·김승원·이규민

윤준병・박 정・김성환

이소영 · 강득구 · 김원이

강훈식 • 이용빈 • 양이원영

정춘숙 · 노웅래 · 임종성

김병욱 • 유정주 의원

(17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닐·플라스틱 등 1회용 제품의 사용이 늘어나 환경문제가 점점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재활용 가능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하 "재생용품"이라 한다)을 만들려는 생산자와 이러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활동도 나타나고 있으나 어떤 제품이 재생용품인지쉽게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해당 제조업이 성장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요가 있어야하나 시장에서 결정되는 구매력만으로는 부족하여 국가나 공공기관도 구매에 나설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재생용품에 재활용 가능한 원료의 사용 비율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재생용품을 구별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공공기관 등도 의무적으로 재생용품을 구매하게 함으로써 재생용품 시장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8 및 제37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8을 제34조의9로 하고, 제34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8(재생이용 제품의 표시) ① 환경부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재생이용을 한 제품의 제조업자는 사용한 원료의 비율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표시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7조의2(재생이용 제품의 의무구매)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은 제34조의8제1항에 따른 재생이용 제품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구매하여야 하고 구매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따른 구매 실적을 조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 <u>〈신 설〉</u> <u>제34조의8(</u> 자발적 (생 략) < <u>〈신 설〉</u>		체결)	제 정 안 제34조의8(재생이용 제품의 표시) ① 환경부령이 정하는 비율 이 상으로 재생이용을 한 제품의 제품의 제조업자는 사용한 원료의 비율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9(자발적 협약의 체결) (현행 제34조의8과 같음) 제37조의2(재생이용 제품의 의무구매)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은 제34조의8제1항에 따른 재생이용 제품을 환경부령이 정하는일정비율 이상 구매하여야하고 구매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따른 구매 실적을 조사하여 평

<u>가할 수 있다.</u>